

이 자료는 2018년 3월 26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

2018. 3.

기 획 재 정 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안]

2018.3.

기획재정부

# 순서

## [제1편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I. 재정운용 여건 ..... 2
- II.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4

## [제2편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I.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 29
- II.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 31
- III.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 32
- IV.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 65

# 순서

## [제3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I. 기금운용 여건 ..... 71
- II.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72

## [제4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I.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 79
- II. 수입계획 작성지침 ..... 82
- III. 지출계획 작성지침 ..... 86
- IV. 협의 및 보완 ..... 97

**제1편**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I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건조한 성장세 예상되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 상존

-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 동반 회복세 등 건조한 성장세 전망
  - 미국은 세제개편,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 지속
  - 유로존은 내수 성장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고, 일본은 대외수요 확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완만한 성장 예상
  - 중국은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안정적 성장, 기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자원국 중심 회복세 확대 전망
-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주요국 성장률 전망(% , IMF, '18.3월)

	'16년	'17년	'18년	'19년
세 계	3.2	3.7	3.9	3.9
- 미국	1.5	2.3	2.7	2.5
- 유로	1.8	2.4	2.2	2.0
- 일본	1.0	1.8	1.2	0.9
- 중국	6.7	6.8	6.6	6.4
- 신흥국	4.3	4.7	4.9	5.0

□ (국내경제)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 세계경제 성장·교역 개선세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가계소득 확충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개선될 전망
- 다만, 대외 통상현안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부담 확대 등은 위험요인

---

□ (세입여건) 세수는 국세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이 향후 세입여건을 제약할 가능성

---

- 세계경제 회복, 수출 호조 등 경기 개선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힘입어 향후 세수는 호조세를 보일 전망
-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유가 등 경제변수는 국세수입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세출여건)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증대

---

- 고용안전망 확충,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점차 심화
- 청년 일자리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도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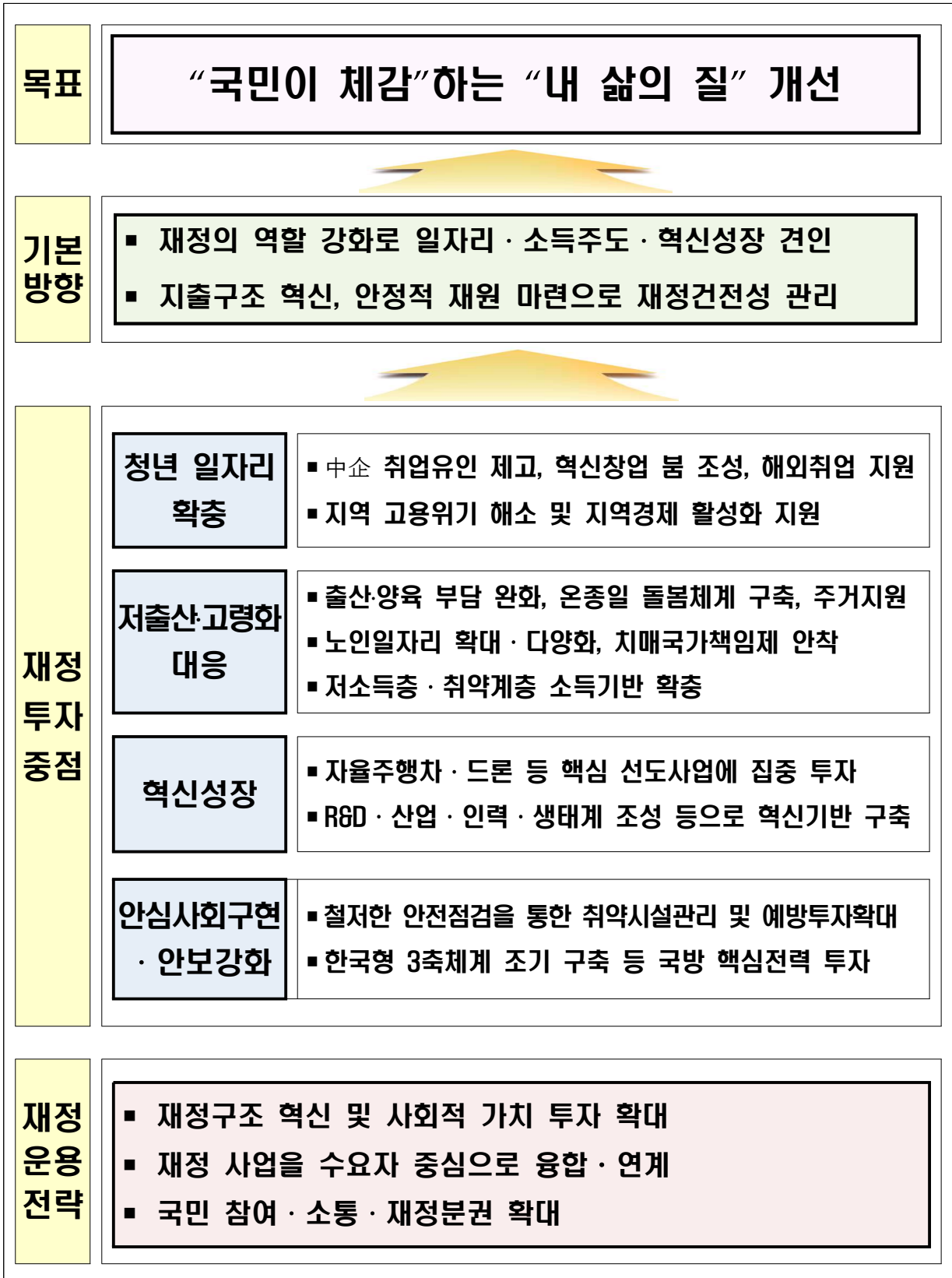
□ (수지·채무)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나, 세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모습
- 미래 위기 대응, 통일 대비 등을 위해 재정혁신을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II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
  -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5.7%)
- 에코세대 고용시장 진입에 대비하여 취업, 창업, 교육, 주거 지원 등 청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추어 패키지 지원
-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소득분배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

- 사회안전망 확충, 가계소득 증대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量·質)·소득 여건 획기적 개선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인력·거점·생태계 조성 투자 강화 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 □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 저성과·유사중복·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재정 여력 확충
- 사업목적·재원이 유사한 특별회계·기금을 정비하고, 역외 세원관리 강화·국유재산 대부 활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및 국민참여 예산제를 본격화하고, 국가-지방간 기능·역할 조정 추진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

## □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지역 고용위기 대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
-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
- 창업경진대회 확대, 오픈 바우처 도입, TIPS 사업 개편 등 혁신 창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창업 붐 확산
-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해외봉사단 확대·취업연계 강화, 개발협력 분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해외 진출 경력사다리 마련
- 저임금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 등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연착륙 방안 마련
-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 저출산·고령화 선제적 대응 및 양극화 해소

-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투자로 결혼-출산 지원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저출산에 대한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학대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 □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및 AI·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융합적 R&D 기획으로 성과 지향
- 도심 노후산단을 스마트化하고, 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 우수 인력양성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훈련 지원으로 4차산업형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
- 혁신모험자본 확충, 데이터 활용 촉진, 판교모델 등 혁신거점 확산,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으로 혁신기반 조성

---

## □ 국민 안심사회 구현 및 안보 강화

---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대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DB를 구축·관리하고, 취약시설 정비·보수 추진
- 철저한 안전대진단, 안전인증제 도입·안전지표 공표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
-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 대응 및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지원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 등 핵심전력 투자 확대, 국방운영 효율화 등으로 '국방개혁 2.0' 추진기반 확보 및 실행력 제고
- 국민·국제사회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대화·협력 진전에 대비

## [전략 1] 재정 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

### ① 지출구조 혁신

- 각 부처는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 '18년 예산에서 구조조정된 사업은 구조조정 사유(성과미흡, 집행부진 등)가 해소된 경우에만 증액 요구 가능
- 또한, 기존 재정사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지출구조 혁신(33개 과제)'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상시적 지출구조 개혁을 위해 추가과제 발굴시 인센티브 부여

### ㉠ 성과를 기반으로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

- 각 부처는 80대 핵심사업 중심의 현장밀착형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직접일자리 등 일자리사업은 고용효과\*·사업성과\*\*를 감안하여 등급(A~E)을 부여하고,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등 효율화
  - \* 고용영향평가: '18년에는 대상을 R&D, SOC 등까지 확대할 예정(1,000개 내외)
  - \*\* 고용률, 고용유지율 등 평가
  -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프로그램 다양화(보육, 돌봄 등 사회 서비스와 연계)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사업별 성과, 고객 만족도, 전문가 평가 등 다각도의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

#### ㉞ 중복·누수 등 지출 비효율 차단

- 중앙-지자체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사·중복 제거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 농업생산기반 사업은 쌀 생산 중심에서 재해 예방 중심으로 투자를 효율화하고, 쌀 생산조정제 개선 등을 통해 구조 개편

#### ㉟ 전달체계 개선으로 정책 효과 및 체감도 제고

- 지역 중심 One-stop 복지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의 불편요인 해소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BI), 테크노파크(TP) 등 지역 혁신지원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 지역 기업들이 부처·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기업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혁신 바우처」 도입 추진

#### 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예산 요구

- 일자리·복지 분야 등의 특정 연령층 대상 지원사업은 연령별 인구변화 영향을 반영하여 요구

#### ② 재정구조 혁신 및 세입기반 확충

- 사업목적·재원조달 구조가 유사한 특별회계·기금을 정비
-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면서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 국유재산 대부 활성화를 통해 국유지 임대수입을 증대하고, 유휴 국유지 개발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 ③ 예산 과목구조 개편

- 국민의 예산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중요성, 조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 부처에 대해 예산사업 체계 정비
- 부처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4~5월)하고, 각 부처는 개편된 과목구조에 따라 예산을 요구

## [전략 2]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

### ④ 다부처·융합형 R&D 체계로 개편

- 혁신성장 선도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으로 신규 기획하여 요구
  - (다부처 융합형) 부처 매칭형 사업추진으로 효과 극대화
  - (산학연 연계형)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과제 기획·수행 단계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
  - (패키지형) R&D 투자와 함께 인력양성, 제도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R&D PIE 분석 활용)

### ⑤ ODA 융합예산 2.0 추진

- '18년 추진한 융합사업의 경우 추진경과 등을 점검·평가하여 우수사업 집중 지원
- 신규 ODA 융합사업은 수원국별 ODA 수요 전수조사, 통합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부처 공동으로 기획

## ⑥ 산업단지 지원 연계 강화

- 산업단지는 지식 첨단산업 수요를 감안하여 도시첨단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방식으로 전환 추진
- 산업단지 조성 또는 고도화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복지·주거·문화 혜택 등을 연계하여 요구

## [전략 3] 국민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 ⑦ 국민 참여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

-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향상
- 수요자가 재정정보를 손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맞춤형 재정정보를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

### ⑧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등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계적으로 지방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4→3%), 보통교부금 배부기준 간소화 등 지방교육재정 자율성 확대

## ⑨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안전 투자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금),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안전투자 확대
- 지자체별 안전투자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차등 지원
- 안전 인증제, 안전지표 공표 등을 통해 민간, 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재해·재난투자 확대를 유도

## [전략 4]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 지원

### ⑩ 사회적 가치의 핵심요소에 대한 중점 지원

- 안전, 인권 증진, 사회통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 지속가능성 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요구
  - \* (예) (인권보호) 여성·아동·장애인 등 인권 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등 (환경 지속가능성 보전)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 사회적 가치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
- 예비타당성 조사시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추진

## [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 ]

- ◇ **[복지]** ①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의과학자 양성·의료 인프라 확대 등 보건산업 육성
- ◇ **[일자리]** ①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일경험 확대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②일-생활 균형 지원
- ◇ **[교육]** ①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학재정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고, ②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지원
- ◇ **[문화체육관광]** ①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으로 안정적인 문예·창작 인프라를 조성하고, ②고부가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 ◇ **[환경]** ①미세먼지, 생활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②환경기초시설 등 인프라 투자는 신설에서 유지보수로 전환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①혁신창업 성장단계별 지원 및 노후산단 스마트화 등 인프라 개선으로 일자리 기반 확대하고, ②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 **[SOC]** ①신규 투자보다는 노후 SOC 기능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②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관련 SOC 투자 확대
- ◇ **[농림수산]** ①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②청년 등 신규 농어업인력 육성 및 스마트 팜·양식 확산으로 농어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 ◇ **[R&D]** ①융합과 연계로 'R&D+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②성과 창출형 R&D 사업에 우선 투자
- ◇ **[국방]** ①무기체계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 국방예산을 효율화하고, ②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 등 '국방개혁 2.0' 지원 및 실행력 제고
- ◇ **[외교·통일]** ①ODA는 청년 해외진출 지원, 융합 예산을 통한 효과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②남북 대화·교류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 대비
- ◇ **[일반지방행정]** ①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②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 ◇ **[안전]** ①철저한 국가안전대진단 지원 및 ②재난안전특교세(금) 등을 활용한 지방책임 강화하고, ③주요 SOC 시설물은 '19년까지 100% 내진성능 확보

# 1. 복지 분야

---

## 1. 중점 투자방향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지원 등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 요양·양로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으로 노인층 빈곤 완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 소득수준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확립 및 복지 소외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동수당,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노인·장애인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학대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양질의 공적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
- 국민건강·안전 투자 확대 및 보건산업 활성화 지원
  - 의료감염관리, 소비자중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안전 투자 확대
  - 취약지 의료 인프라, 권역외상센터 등 공공의료 지원 강화
  -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보건산업 성장 동력기반 확충

---

## 2. 지출 효율화 계획

---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복지지출 효율화
-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및 제도개선,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방안 마련('18.9월 1차 건보종합계획 수립)

## < 일자리 >

### 1. 투자 중점

- 에코세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대폭 강화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주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청년 고용 확대
  - 교육·창업·해외진출 등 청년의 다양한 정책수요 발굴·지원
    - \* (예시) KOTRA(아세안 진출수요파악) + 대학·방송(강좌, EBS, 온에어 등 어학교육) + 고용서비스(K-MOVE 센터, 월드잡 코리아 등 알선) 등 연계 지원
  - 국내 및 해외의 일경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하여 직업훈련 개편
  - 구직자·재직자 대상 신기술·고급훈련 투자 확대
  - 훈련 격차·사각지대 축소 등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일자리 수요에 기반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
  - (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역량 촉진
- 실업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안전망 강화 및 고부가입 확대 지원

### 2. 지출 효율화 방안

-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환류, 중앙-지자체 간 일자리사업 연계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재원 배분 효율화
- 유사 중복 및 저성과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지원

## 2. 교육 분야

---

### 1. 투자 중점

---

- 공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우수인재 양성 지원
  - STEAM(과목간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 배양 추진
  -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SW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첨단 교육환경 구축 지원
-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 지역인재 양성 거점(Hub)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및 대학별 강점 분야 육성을 통한 대학-지자체 협력 확대
  - 혁신선도대학 확대 등 기업과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산학협력 모델을 개선하여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
- 대학생 학비 및 주거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을 통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 공공·연합 기숙사,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국립대 BTL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건립 지원
-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 K-MOOC,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등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소외계층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 2. 지출 효율화 방안

---

- 기존 유사·중복성이 높은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단순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추진
-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동을 축소하고 안정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추진

### 3. 문화 · 체육 · 관광분야

---

#### 1. 중점 투자방향

---

-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차별없이 문화를 누리는 사회 조성
  -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 문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 통합문화이용권, 체육 바우처 등을 통해 계층·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 확대
  -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 구현 위해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뒷받침
  -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뉴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집중 육성
  - 창작자와 기업이 창업·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프라 적극 제공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 지원

---

#### 2. 지출 효율화 계획

---

- 소액·다건식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방식 개선, 복잡한 과목 구조 개편 등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역 축제 및 행사, 백화점식 지역개발사업 등은 점진적으로 축소
  -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10억원 미만 축제·행사 지원에 대해 단계적 일몰제 적용

## 4. 환경 분야

---

### 1. 투자 중점

---

- 대기·생활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의 질 개선 투자에 중점
  -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성과 도출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민감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녹조, 지반침하(쌍크홀), 도시침수 등 고질적인 환경난제 해결 지원
- 자연성 회복, 자원순환 기반 구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대국민 생태서비스 제공 확대
  -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등 단순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감소를 유도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기반 마련
-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보호와 함께 성장동력·일자리 창출

### 2. 지출 효율화 계획

---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으로 환경 인프라 투자 내실화 도모
  - 투자우선순위, 집행가능성 등 감안 시설투자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노후 시설 교체·개보수 투자 비중을 확대
- 보조금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합리화 추진

## 5.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1. 투자 중점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
  - 규제혁신과 연계한 新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 지원으로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
  -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핵심인재 양성 및 맞춤형 수출 지원 등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지역의 혁신 인프라 조성 강화
  -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을 통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창업경진대회 확대, 오픈바우처 도입 및 TIPS·사내분사 창업 지원 등 우수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 성공사례 적극 창출
  - 노후 산단을 청년 친화적 스마트 산단으로 재창조하고, 국가혁신 클러스터 등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재생에너지 3020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의 체계적 이행 지원
  - 계획입지제도 도입 및 입지·건축물 규제 철폐, ESS(Energy Storage System) 확대 등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

### 2. 지출 효율화 방안

- 업종별 칸막이 지원방식을 융합형으로 전환하여 중복투자 해소
- 에너지부문은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기존의 화석연료 비축·생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합리화
- 지역 여건에 맞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
  - 창조경제혁신센터·TP·BI 및 지역별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 지원기관 간 역할 조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성과를 중심으로 후속지원 연계를 강화

## 6. SOC 분야

### 1. 투자 중점

-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건설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
  - 전년 이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화 추진
- 혼잡구간 해소 및 교통수단·노선간 네트워크 강화에 우선 투자
  - 대도시권 순환도로, 수도권 광역철도 등 지속 투자로 출퇴근 시간 단축에 기여
  -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투자 강화
- 안전투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국민체감형 투자 확대
  - 역주행 방지,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교통시스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주요 SOC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여 댐 치수능력증대·용수공급 등에 투자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확대
  -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등 선도사업 중점 투자를 통한 성과 창출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으로 구도심의 주민 체감도 제고

### 2. 지출 효율화 방안

- 불필요한 고규격·과잉설계 방지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고난이도·고부가가치 기술 적용 확산에 투자
  - 신기술·신공법 등을 통해 원가 및 유지·보수비 등 절감 추진
  - 기존 시설 개량·연계, 선형개선 등을 통해 신규노선 최대한 억제
    - \* 대체교통수단 등을 고려한 신규노선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산업단지는 지식·첨단산업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복지·주거·문화 혜택 등을 연계하여 추진

## 7. 농림수산 분야

### 1. 투자 중점

- 청년이 찾는 스마트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도약
  - 청년을 중심으로 농어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인력을 육성하고, 정착·성장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농 생태계 조성
  - 스마트팜·스마트양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고,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신성장 모델 발굴
-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혁신, 농산어촌 복지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고소득 밭작물로의 다변화를 통한 소득증대 유도
  - 빅데이터·AI 기반 수급예측,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직거래 및 신유통경로 확산 등 수급·유통구조 개선
  - 농어촌 특화형 사회안전망 확충, 거점 중심 정주환경 정비, 6차산업화 및 귀농·귀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도모
-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사전적 재해 예방체계 구축
  -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 GAP·HACCP 인증 및 친환경 농어업 확대 등 생산단계부터 농수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
  - 가뭄·홍수·산불 등 재난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 2. 지출 효율화 방안

- 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쌀 생산 중심에서 재해 예방 중심으로 투자 효율화

## 8. R&D 분야

### 1. 투자 중점

-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을 중점 지원
  -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성과를 조기 가시화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출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처 예산 요구
-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
  -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R&D 사업은 R&D 예산 사전 배분·조정 시(과기혁신본부) 인센티브 부여
  - 재난재해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 치매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구자 중심(Bottom-up)의 기초연구 투자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기술특성(초연결성)에 맞추어 R&D 지원 체계 개편
  - 혁신성장 관련 사업들은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R&D PIE 분석)로 지원하고 분야별로 관리·평가
  - 다부처 공동기획, 산학연 연계 등 과제 기획·수행시 R&D 융합·연계 강화

### 2. 지출 효율화 방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형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추진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방지 등 효율화 추진
- R&D 성과평가(과기혁신본부 시행) 결과, 성과 미흡 사업은 구조 조정하여 평가결과와 R&D 예산 연계
- R&D PIE 분석을 통해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 관련 제도, 규제, 기술 등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 강화
  - 정책·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제도개선 실적과 연계하여 지원

## 9. 국방 분야

---

### 1. 투자 중점

---

-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 2.0 집중 투자
  -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 및 확고한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확충
  - 예비전력 정예화, 군수지원 능력 보강 등 군사대비태세 강화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장병 사회복귀·일자리 창출 지원
  - 야전 취사식당 등 복무환경 개선 및 사격장 안전설비 구축
  - 장병희망준비적금 활성화, 진로·취업 컨설팅, 전문상담관 배치 등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활동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 R&D 역량 강화
  - 첨단 상용 ICT 기술을 군 내 적용하여 작전능력 향상
  - AI 등 4차 산업 선도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戰에 대비한 창의·도전적 무기체계 개발

---

### 2. 지출 효율화 방안

---

- 시설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효율 저비용 국방조달 체계 구축
  - 신축 중심에서 유지·보수 중심으로 시설예산 효율화, 주요 상용물자 조달시 수의계약 축소 등 경쟁체계 확대
- 무기체계의 개발 단계별 비용 이력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방 총사업비 증가 최소화

## 10. 외교 · 통일 분야

---

### 1. 투자 중점

---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활동 지원 강화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신북방·신남방 정책 추진 등 외교 지평 확대
- 해외테러·범죄에 대비, 우리 국민의 안전 및 권익보호에 역점
  - 사건·사고대응 체계 구축, 영사서비스 개선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대화 활성화 및 남북 간 교류 협력 확대
  - 남북회담 정례화·체계화, 민간·지자체의 다양한 교류 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 노력
-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토대로 균형 잡힌 통일정책 추진
  - 통일국민협약 등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지원
-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 및 청년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 2. 지출 효율화 계획

---

-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ODA 융합예산 편성 확대를 통하여 급증하는 ODA 재정 지출의 효과성 제고

## 11. 일반·지방행정 분야

---

### 1. 투자 중점

---

-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확산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개선
  -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사회통합 및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 국가·지방간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지역산업육성 등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지원
  - 지역밀착형 사무 등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

---

### 2. 지출 효율화 계획

---

- 지역발전·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 효과 제고 및 지자체 사업과 연계 강화
  
- 특별교부세의 국가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국가 정책 관련 지원을 확대
  
- 정보시스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부진 사업, 유사·중복 기능 등에 대한 통·폐합 추진으로 시스템 운영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 1. 투자 중점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 및 생활법치 확립
  - 국민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고, 과학·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범집행력을 강화
-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 도모
  -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배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 교정시설 출소자, 난민,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화
- 해양에서의 굳건한 국민 생활안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연안에서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고위험물 선박 사고에 신속히 대응 가능토록 신규 장비 투자를 확대

### 2. 지출 효율화 방안

- 법률 구조 제도의 운용 및 효율화 추진
  - 대법원, 법무부가 운용중인 국선변호(형사), 소송구조(민사),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제도의 효율적 연계·집행 방안 마련
- 해경 운용 장비와 전문인력 등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
  - 신규 장비의 확충에도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장비 및 조직 운영예산 소요에 대한 과감한 감축조정 추진

## < 안전투자 >

### 1. 투자 중점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 안심시대 구현
  - 자살, 교통·산업·화재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투자 확대
  - 미세먼지, 감염병, 불량식품, 유해 화학물 등 생활밀착형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점검 및 예방투자 확대
  -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점검결과를 DB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
  -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해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 시설·재난취약지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 및 정비 추진
  - 내진보강·활성단층 조사, 가뭄, 대형화재, 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투자 확대
- 사람중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생활속 안전중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및 의식개선

### 2. 지출 효율화 방안

- 안전분야 투자확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추진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금),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의 안전투자 확대, 안전관련 지자체 고유업무에 지방재원 우선 확보

**제2편**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I

##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 1

#### 지침 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 \* 부처 실무자들이 요구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서식, 작성 요령, 기준·단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은 별도 배포

### 2

#### 적용 대상

-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적용됨
- 동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

### 3

#### 예산요구 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 내부 의견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 적극 수렴
  -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 (예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를 거쳐 예산을 요구

## □ 첨부서류

-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 '18~'22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각 연도별 국세·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항목·연도별 세출소요)
- '19년도 성과계획서, '17년도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조)
-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

## □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를 5.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II

#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 1

## 국세수입

- 대내외 거시 재정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후 징수 가능한 국세 수입액을 계상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
- 적극적인 국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 작성

### 2

## 세외수입

-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상
  -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 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배당정책('14.12월)에 따라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적정한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적용
  -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 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징수율이 낮은 경상이전수입은 실효성 있는 불납결손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
  - 납기를 초과한 연체채권은 채권관리 전문기관 활용 등 적극적 세외수입 채권관리 계획을 제시
    - \*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내용을 포함
  -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 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예산체계 내 흡수하는 방안 마련

## [ 신규사업 ]

##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2019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 설명자료에 첨부
- 신규사업 총소요는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
-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
  - \* (예시) 대규모 농지조성 사업 신규착공 등은 쌀 공급과잉과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
-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2에 준하는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

## □ 재원대책 마련

-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Pay-go 적용)
-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의 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2019년도 청사 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 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 [ 계속사업 ]

- 모든 재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사업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규모, 지속추진여부, 투자시기 재검토
-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준용

## [ 유사·중복 사업 조정 ]

- (정비 원칙)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 20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실국으로 통폐합 추진
- (부처간 유사·중복) 외부기관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적극 발굴
  - 서로 다른 부처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 지원대상은 다르나, 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해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주요 통합사례 >

▽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대상별로 미래부(중·고등학생 및 성인)와 방통위(유아·초등학생)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방통위 사업으로 통합

-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부처별로 추진하되 단순 회계통합 보다는 전달체계와 사업방식 개선 등 실질적 효과에 집중
  -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 동일 사업목적과 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분산 추진 → 여유자금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 이관
  -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등
- (신규 요구사업 유사중복 상호검증)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부처간 상호검증 실시
  - 유사중복이 분명한 경우 미반영 원칙, 의견 미제출 부처에 대해서는 추후 기존 사업 통폐합 우선 고려 등 불이익 검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세부사업 및 주요내역사업 변동 포함) 요구시 [양식 8]의 신규사업리스트를 작성하여 「2019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5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1 신규 보조사업

-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대상 제외 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은 요구 불가
  - \* 단순히 사업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특별교부세(금) 지원 사업 포함)은 예산 요구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강화
  - \*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심사 결과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
  - 100억원 미만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타부처와의 상호검증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심사
- 신규 자본보조 사업은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율은 50% 이하로 검토

### 2 계속 보조사업

-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16년~'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폐지, 사업방식 변경 등)를 예산에 반영하고, 평가 미대상사업은 [양식 9]의 '보조사업 자체진단서'를 활용하여 각 부처가 사전점검

#### < 점검 제외되는 계속 보조사업 >

- ✓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방분야사업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포괄보조금)
- ✓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기계약된 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 ✓ 5개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
- \* ex)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국지도사업 등

### ③ 자치단체 보조사업

-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 추진
- 사전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 사업계획 공고,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요구(불가피할 경우 세부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 시설사업의 경우 2~5년간의 조사·설계-보상·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집행부진, 지방비 미매칭 등)을 감안하여 적정소요를 반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자치단체 중기 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 전년도 지방비 분담 실적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 계속사업은 전년도 기 지원한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 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국고 편성

### ④ 민간 보조사업

-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은 지원 불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 5 보조사업 구조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구조조정 대상(예시) >	
i)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ii)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iii)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iv)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v)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vi)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국회, 감사원 등)이 있는 사업

- 보조사업 평가 결과(운용평가 및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19년 폐지·조건부 폐지 대상 사업
  - '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19년 폐지·조건부 폐지 대상 사업
  - '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19년 폐지·조건부 폐지 대상 사업

### <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 용 방 안
○ 보조사업 운용평가('15)		
폐지	① 즉시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② 단계적 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일몰기한 제시)
	③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유지	④ 단계적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⑤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⑥ 정상 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고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보조사업 연장평가('16, '17, '18)		
① 정상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고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②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③ 조건부 폐지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

-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 ✓ 현행 직접보조 방식 →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 지분취득 (토지매입비) 방식으로 전환
-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 위탁사업비로 변경

-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

- 실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타 회계 지원 요구 금지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 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방식 등 결정

## [ 기본원칙 ]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 예산연계 기준 ]

재정사업 자율평가

- 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예산 요구 및 편성
  -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되, 향후 사업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조정 가능
  - ※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 등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
  -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서 성과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
  -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 편성시 감액 가능

핵심사업 평가

- 핵심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18년 분기별 핵심사업 평가결과(‘17년 시범평가결과 포함)에 따른 예산조정 및 제도개선 제시사항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 핵심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및 제도개선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감액 가능

---

## 심층 평가

---

- 심층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또는 감액 가능
  - 추진 중 심층평가는 중간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17년 심층평가 6개 과제\* 관련 사업은 '18.4월까지 중간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요구
- \* ①신재생에너지 지원, ②문화콘텐츠 육성, ③농업인력 양성, ④수산물 유통지원, ⑤고용장려금 체계 개편(청년일자리 중심), ⑥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

## [ 성과계획서 작성 ]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 단,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소관 주무 부처에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

####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등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9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4월중 통보 예정
- 예산의 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화시켜 운영

#### □ 예산안 편성결과 반영

-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예산금액·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수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 \* (예시) 예산 증감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 연계·수정, 사업내용변경(보조율 증감, 지원단가 및 물량 변경 등)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 사업개요 수정

#### □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단위사업 기준)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운영
  -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등을 성과계획서 별첨 자료에 작성하여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시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

## 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 [ 기본 원칙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 ]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등

## [ 세부 지침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전연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매년 4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제출(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면제 절차에 따라 신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판정결과에 따라 예산 검토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3조)
    - \* 주무부처에서 예타면제 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능(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0조)
  -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예상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총사업비를 과소계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부과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

## [ 기본 원칙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 그 밖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 및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등 관리 필요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고에서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 [ 세부 지침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예비비(10%)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자율조정 후 예산 요구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25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
  -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참고

## [ 작성 대상 사업 ]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 ※ '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작성 대상으로 하되,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라 분류

## [ 세부 지침 ]

-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i) 성평등 목표, (ii) 사업 총괄표, (iii)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 (성평등 목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8년 및 '19년 예산현황 작성
    -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9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 [ 편성 대상 ]

-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건축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시행령 제14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

1.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연부액을 정하여 요구

- 계속비 예산안 편성 한도(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 부문(장관항 중 관)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와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는 추후 통보

\* 토지매입비(410목), 건설비(420목)

## [ 편성제외 대상 ]

- 사업성격상 계속비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 낙찰차액 발생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

-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 타당성재조사 또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잔여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된 사업유형별 연부액 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

## [ 기본원칙 ]

-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성과와 예산의 연계 강화
- 일자리사업의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활용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일자리사업 설계·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설계·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추진

※ 「2018년 일자리사업 설계 운영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에서 기 배포 (18.3월)

## [ 예산연계 기준 ]

## 고용영향평가

-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예산 요구시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를 요구 자료에 포함
  - (대상사업) 부처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① 일자리 사업('18년 기준 19.2조원, 24개 부처, 183개 사업)
    - ② 예산 요구액 기준 100억원 이상 SOC·공공조달 사업
    - ③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50% 이상 참여 사업 유형으로 구분한 R&D 사업

\* 단, 법정지출 등 경직성 지출, 재난예방·복구 사업, 국가 안보·국가간 협력 관련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

- (평가결과) 예산안 편성시 고용창출규모를 고려하여 사업 우선 순위 판단의 지표로 활용
- (향후일정) 가이드라인 배포 및 담당자 교육(4월) → 예산 요구(5월말)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18.4월 배포 예정)

##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 각 부처는 소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하여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제도개선 의견 등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송부

##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및 효율화

- 일자리사업은 매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계·운영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여 예산을 요구
  - 일자리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별로 적절한 정책대상, 전달체계, 사업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
  -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송부

\* 일자리사업별 성과등급, 사업 개선의견 등 포함

- 출연대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국가재정법 제12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보조 또는 민간위탁 성격의 사업은 보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양식 10]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전적격성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 \* 사전적격성 심사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출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출연기관에서 수행,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세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
  -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지원소요 연차별 축소하고, 향후 출연금(보조금 포함)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등은 금지
  -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 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
    - 제도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출연금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예정
    -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
    - 자체수입 증가없이 사업비 등 지출을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중단
  -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이하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 [ 기본원칙 ]

□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8.1.11)」의 대상사업은 과제별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관련 대상사업 및 과제별 추진계획은 기 배포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 및 「지출구조 혁신 과제별 추진계획」을 참고

## 지출구조 혁신 과제 (33개)

분 야	과 제 명	
I. 혁신 성장	<b>1. 산업 생태계 조성</b>	<b>2. 농정 패러다임 전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li> <li>② 친환경차 보급 정책수단 재편</li> <li>③ 산업단지 지원방식 합리화</li> <li>④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li> <li>⑤ 관광시설 지원사업 효율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li> <li>② 청년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li> <li>③ 축산 사육환경 개선</li> </ul>
	<b>3. 인적자원 개발</b>	<b>4. R&amp;D 투자 효율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학 창업 지원체계 강화</li> <li>②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기업 R&amp;D 지원체계 효율화</li> <li>②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선</li> <li>③ 신약 범부처 R&amp;D 추진</li> <li>④ 미래 신기술 국방 R&amp;D 추진</li> </ul>
II. 복지·고용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복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li> <li>②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li> <li>③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li> <li>④ 직업훈련사업 재구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li> <li>⑥ 수형자 직업훈련 강화</li> <li>⑦ 폴리텍대학 역할 재정립</li> <li>⑧ 두루누리사업 정상화 방안</li> </ul>
III. 저출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저출산 사업 구조개선 (재정관리체계 개선, 모성보호사각지대 완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지원 강화</li> </ul>
IV.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연사업 누수 방지</li> <li>② 정보화사업 효율화</li> <li>③ 석탄산업 지원 개선</li> <li>④ 지역축제·행사 지원사업 개선</li> <li>⑤ 사업성과 기반의 복권기금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li> <li>⑦ 특수목적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li> <li>⑧ 지역콘텐츠 지원사업 통합</li> <li>⑨ 효율적 관공선 운영·관리체계 마련</li> </ul>

## [ 주요과제별 지침 ]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및 첫걸음 지원제\*\*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지원졸업제: 기업당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누적 총액을 25억으로 제한

\*\* 첫걸음지원: 정책자금 예산의 60%를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배정·지원

- (산업단지 지원방식 합리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매입비 지원 대상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정

- (관광시설 지원사업 효율화) 숙박시설 지원은 축소하고, 관광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관 출연 등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규모 관광 업체 융자지원 강화

- (청년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 청년 영농인 지원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수요자 편의 증진 및 정책 효율성 제고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① 국립대 지원, ② 대학혁신, ③ 연구, ④ 산학협력 등 4개 유형으로 간소화

\* 기존 주요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통합 → (1유형) 자율형 , (2유형) 역량강화형 분리운영

- 교육부 외 타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 요구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효율화) 경영자금 성격의 소액·단기 R&D사업은 축소하고, 전부처 대상 R&D 지원졸업제 시행

-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 활용 및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위해 R&D 바우처 수탁기관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각 부처는 성과 지향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설계 또는 조정하여 예산 요구
  - 각 부처는 「일자리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 요구(고용부, 3월중 수립, 별도 배포)
  -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조개선을 실시(고용부 상반기 중 추진)
  
- (직업훈련사업 재구조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등 4차 산업혁명형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 확대
  - 신규·변경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시 고용부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
    - \*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시 예산심의 대상 배제 등 페널티 부여
  
- (폴리텍대학 역할 재정립) 폴리텍대학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위과정은 축소하고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강화
  - 향후 신설되는 캠퍼스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분(40%)을 제외한 국고 부담분(60%)만 예산 요구
  
- (석탄산업 지원 개선) 석·연탄가격을 현실화하여 생산자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 연탄사용 저소득가구 직접 지원은 비연탄 에너지 전환 촉진 등 보완책을 검토하여 요구
  
-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 상담, 직장교육 등 기존 서비스 외에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신규 서비스\*\* 적극 발굴하여 예산 요구
  -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가부) 등
  - \*\* 예시) 고용보험DB 등과 연계한 휴직자 네트워크 및 대체인력 정보 제공 등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경력단절 여성 특화 취업패 등)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반드시 첨부

- (출연사업 누수 방지) 각 부처는 신규 출연사업을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 예산 요구
- (정보화사업 효율화) 정보시스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부진 사업, 유사·중복 기능 등에 대해 통·폐합하여 예산 요구
- (지역 축제·행사 지원사업 개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10억원 미만 축제·행사 지원에 대해 단계적 일몰제 적용
  - \* 다만, 균특회계 포괄보조 대상사업은 일몰제 적용에서 배제

※ 기타 관련 사항은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참조

## [ 기본원칙 ]

- 각 부처는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사업숙성을 거쳐 예산요구

## [ 세부지침 ]

적격성 점검

-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사업을 분류하여 소관 부처로 송부
- 각 부처는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 실시
  - 예타 등 선행절차 필요사업, 법 개정 선행 필요사업, 특정 지역·단체 지원사업 등은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
  - \* 적격성 점검시 상세한 적격·부적격 판단기준은 기통보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참조
-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 확정
  - \* 민간전문가, 기재부 및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국민제안 숙성

- 각 부처는 적격성 점검을 통과한 국민제안을 숙성하여 예산사업화
  - 예산요구 양식에 맞춰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산정
- 예산사업화 과정에서 각 부처는 기재부(예산실 소관과)와 협의
  - \* 협의내용 :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과거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인지 여부, 지원물량·단가의 적정여부 등
-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 확정

## 예산 요구

- 각 부처는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확정된 참여예산 후보 사업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부처별 지출한도와 별도로 요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통보('18.3월)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참고

### □ 재정용자사업

-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용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 특별회계·기금 사업

-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대폭 정비
-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특별회계·기금의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
-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

###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19년 당해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감액분을 해당 중앙관서의 '19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하여 요구 가능

###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기준 >

①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②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③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 (입지 선정 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 세출예산사업 검토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

\* 조세지출 건의·평가서에 명시된 관련 예산사업·조세지출 내용,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

□ 상용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극 활용, 일·가정 양립 및 예산절감 도모

## □ ODA 대상 사업

-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
-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하는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국고지원 여부 판단

< 세부판단 기준 >

구 분	세 부 기 준
① 형식요건	· 공인된 국제기구(우선) · 국제기구가 직접 연관된 사업 수행 (국내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유치 금지) · 외국인력 근무
② 사전타당성검토	· 선행 연구용역 실시 원칙 (긴급한 유치 결정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③ 재정분담	· 국제기구가 (운영비) 일부 분담 · 지자체 유치시 정부 지원은 운영비의 30% 이내로 제한 (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경우 예외 인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ODA 대상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에 사전 제출

\* (양자) 유상: 기재부, 무상: 외교부

(다자) 국제금융기구: 기재부, 그밖의 기구: 외교부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업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행기관 통지 및 재정당국에 공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 계획안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5.2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송부
- 다만, 국제기구와의 협의, 외교적 여건 변화, ODA 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편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예산 요구 가능

□ 국가지분취득 사업(지분취득비 비목 수정: 400-490)

- (편성대상) 국가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신규 요구사업\*부터 적용

\* 신규사업 중 의무지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추진사업, 지특(생활기반계정) 등, 사업규모·지원비율 등이 이미 결정된 사업은 제외

- (지분취득) 매입토지에 대한 국고지원분만큼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 '19년 신규사업부터 지분취득비 사업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운영기간 종료시 매각·회수 또는 타 공공 목적으로 활용

□ SOC 사업

- (신규사업) 1차년도에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반영

- 조사·설계 수행 연도에는 연내 실집행이 어려운 보상비·공사비 과다 편성·배정 금지

- (계속사업) 전년도 既지원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 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국고 편성

□ 신규 용역사업

-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준비기간을 감안,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실사용분만 반영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개발(R&D) 등

- 사업기간이 2개년에 걸친 경우, 2단계 계약 추진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 정원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기본경비 및 관련 사업비는 증액없이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
  - 지출증가·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을 반드시 첨부
-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 협의절차 : 재정전략협의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
    -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 · 조정기구
    - 협의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고지원을 10억원 이상 요청하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01년 이후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7회 이상 받은 국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 배제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10억원 미만을 지원받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생활계정)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등을 거친 경우
  - 사후평가 결과 총관람객 수, 외국인 참여비율 등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불이익 부과

## □ 특정 연령층 대상 지원사업

- 일자리·복지분야 등 특정 연령층 대상 지원사업은 연령별 인구변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를 분석하여 요구

- \* (사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건보수입 및 국민연금 급여지출 변동 요인 파악, 노인 장래인구전망에 따른 기초연금 지출소요 추계 등

- \* (예시) 만 60세~64세 인구(만명): ('17)317 ('18)339 ('19)363 ('20)381 ('21)406

- 다만, 특별한 분석 방법이 없을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19년도 연령별 인구수(중위추계)를 활용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19년도 연령별 인구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또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고

## □ 2019년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

- 美 달러화 및 中 위안화 : '18.3.30일 종가 환율

-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美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18.3.30일 종가)

- ※ 2019년 예산안 최종 적용 환율은 추후 통보 예정

**IV****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참고)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예산요구안을 제출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 요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보완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중앙관서에 대해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 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 · 보완사항

-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요구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 중앙관서간 업무 · 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 중앙과 지방과의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자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사전협의 등
  -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지원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대상·지원조건·사업내용·비용부담주체 등
  -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 재정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을 지정 후 예산안 요구시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여부

## □ 세출 구조조정 이행 여부

### ①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추진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 및 재정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의 삭감·폐지 여부
- 의무지출 증액 또는 신규 재량지출 요구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 ②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

### ③ 구조조정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수준

-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18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

## □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업이 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 중복 수급되고 있는지 여부

##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 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 제3편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별도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

# I

## 기금운용 여건

---

① (경제여건)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

※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② (수입여건) 자체수입 확대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인해 전체 자체수입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 통화정책 정상화,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 불확실성으로 용자금 회수 및 부담금 수입 등 증가세는 다소 제약될 것으로 전망
- 

③ (지출여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증가 전망

---

-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인한 의무적 지출 소요는 증가
  -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④ (기금수지) 전체적으로는 흑자, 사업성기금은 적자

---

-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유지하나, 자체수입 감소, 차입금 이자 증가 등으로 사업성기금은 적자 전망

## II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1

### 기금운용 기본방향

#### 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중기취업 유인제고, 혁신창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출산양육 등 생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출산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공적연금의 노후지원 확대 등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안정,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민생안정에 노력
- 중소기업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핵심선도사업 투자 확대, 생태계 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
- 범죄, 산업재해, 화재, 지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등의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 구현

#### ②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기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강화

- 유사·중복 및 구조적 재원 부족 기금 정비 등을 통해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여 기금 건전성관리 강화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반영한 용자조건 재조정과 용자지원 졸업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용자사업 개편 추진
-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지출증가는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로 억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도 병행
-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지원분은 반환 추진
- 여유자금 투자풀 활용 등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을 확대하는 등 통합관리 강화

## 2

##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1) 일자리 창출

#### ① 공공·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공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마중물 역할 강화
- 폴리텍·민간 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육성 기반 마련
- 구직급여 보장성 확대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고용불안 최소화
-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노동 시장 격차 해소

#### ② 청년고용위기 극복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 중기취업 유인 제고, 혁신창업 지원 등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에 따른 청년 고용위기 적극 대응
-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강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을 통해 경력단절 걱정 없는 여성 취업여건 조성
- 중장년의 전직·재취업 여건 조성,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역량 강화

## [2]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

### 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신혼부부 지원 강화

-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어린이집 등 육아서비스 제공 특화단지 공급 등을 통해 신혼부부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 ②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저금리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중산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전월세비용 절감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생애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

### ③ 농수산물 유통혁신. 및 농어가 경영·생활 안정

- 빅데이터·AI 기반 수급예측, 직거래 및 신유통경로 확산 등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유통구조 개선
- 스마트팜·스마트양식을 위한 첨단시설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 견인
- 농가의 성장단계별로 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농지연금 등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안정 도모

#### ④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 소상공인의 협업화·규모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하고,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등 경영위기에 대응한 생업안전망 확충
- 전통시장에 IoT 기반 화재감지시설 확대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 및 이용편의성 증진

#### ⑤ 다문화 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경제적·사회적 적응 지원

- 결혼이민자의 조기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육아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를 해소하여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및 주거안정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한부모의 자립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중점 지원**

####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빅데이터, AI, IoT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창업 연계 및 핵심선도인력 양성 강화
- 제조업과 ICT 등을 결합하여 신산업을 발굴하고, 국민생활에 ICT를 융합·접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들은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분야별로 관리·평가

## ②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지원 강화

- 혁신모험펀드(3년간 10조) 조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창업리스크 경감 등을 통해 혁신창업 활성화
- 창업 초기기업에 창업 컨설팅, 자금(투·융자) 지원 등을 통해 도약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중심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활성화
- 성장 단계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자금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촉진
- 경영안정 자금과 사업전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위기 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마련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③ 고부가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

-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으로 안정적 문예·창작 인프라를 조성
-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新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집중 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체육 바우처 등을 통해 계층·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 [4]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 구현

##### ①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충

-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을 지원하고, 강력범죄·성폭력·아동 학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속 확충 및 치료 및 자립 지원 강화
- 저소득층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

##### ② 국민안전·건강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
-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등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 ③ 산업재해 및 재난에서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안전시대 구현

-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지도 확대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보건 책임 강화로 산재 사고율 감축
-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건설업 안전장비 지원·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통해 산재사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요양 종결 후 예방관리를 통해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화재 및 지진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예방투자 강화
- 자살예방,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사업 지원 강화

**제4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I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

### 1

#### 지침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 2

#### 적용대상

-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
- 동 지침은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

### 3

#### 요구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첨부서류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 2018~2022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 제출기한

-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5.25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 준용 규정

-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중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 □ 기금 자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 ① 여유자금에 있는 기금

- 타 회계 등의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에 지원된 정부 출연금은 해당 회계 등으로 반환 추진
- 타 회계 등의 사업 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으로 이관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확대 및 신규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 불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차입)를 억제하고, 기존예수금은 조기상환 추진

### ② 타 회계 등에서 기금으로 전출

- 기금에 대한 신규 전출금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기금사업은 기금의 여유자원 및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타 회계 등의 지원은 최소화
-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전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산정

### ③ 재정 외 자금의 재정체계 내 편입

-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을 발굴하여 재정체계 내로 흡수

### ④ 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화 노력

- 사회보험의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화 및 장기재정추계(70년)를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 강화

## II

## 수입계획 작성지침

### 1

###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①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

-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용자대행기관을 통한 용자사업
    - \* 대출금리에서 용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가 아닌 반드시 전체 회수 금액을 계상

#### ②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거시경제지표, 최근 3~5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수입 추계
-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문의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분석하여 반영

\* 예시 : 최근 3~5년간의 동일업종 배당성향(실적)과 향후 기업체의 수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차입금) 편성 적정성 제고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기금 지출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반영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고자 하는 기금은 자금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

### ④ 법령, 지침 등 변경시 사전협의

-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수입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2

##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용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2019년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상품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용자이자수입 산출기준

2019년도 각 용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대출이자율 - 용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용자평균잔액은 용자잔액규모, 용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 [2] 용자원금회수

□ 2018년도말 추정 용자잔액 중 2019년도 정기(만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3~5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용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 최소화
  -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자원, 자체수입 등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타 회계 등의 전입은 최소화
  - 여유자금에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 추진
-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최소화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 규모로 한정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 [4] 여유자금 회수

- 2018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2019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단, 동일한 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인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 연중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계상
- 2017년도 미집행 잔액 등 결산상 잉여금은 2019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 2018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018년도 계획에 반영

### Ⅲ

## 지출계획 작성지침

### 1

####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보조·출연사업의 적격성 심사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개편된 비목 변경 내용을 준수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을 의무화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투자효과 극대화
  - 신규의무지출 사업은 중장기(10년) 지출 계획을 첨부(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
- 기금·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하고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제1부 제2편 예산안 편성지침 중 성과평가 대상 사업부분 참조)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 준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불이익 부과
  -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9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 청·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17.1.20일)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

-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
  -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는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를 엄격히 관리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이를 준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 2

##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 1) 기금운영비

####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2019년도 인건비 총액 = 2018년도 인건비 총액 (1+2018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18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19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2] 경상운영비

###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 사업비에 경상적 운영비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적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추진

###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2019\text{년도 경상운영비} = 2018\text{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times (1 + 2018\text{년도 공통 기준율}) + \text{특이 증감소요}$$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경상 운영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경비 등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 운영비에 별도 계상

- 산출기준

$$2019\text{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times \text{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능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 2) 사업비

### [1] 용자사업

- 용자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정책적·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 민간금융시장과 경합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
    -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용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용자조건은 시중금리 변화 등을 반영하고 부처내·부처간 용자사업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검토
  - 용자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고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방식으로 재검토\*
    - \* 외부 차입, 특별한 금리 안정성 요구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예외가 불가피할 경우 대상자·사업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용자기간은 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 또는 손익분기점, 용자 지원대상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취급수수료는 대손을 포함한 관리비용과 용자취급기관의 적정이윤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용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용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 용자조건 재검토시 「용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하는 용자보조비용 및 용자보조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

\* 용자보조비용(용자보조원가총담금) 산정관련 자세한 사항은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하고, 용자보조비율은 용자보조비용을 용자원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

- 2018년부터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3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참조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

- 원칙적으로 직접용자방식(전대방식 포함)과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소요비용 비교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 적용

\* 용자지원에 따른 자원조달비용·취급수수료와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을 고려, 비교

## [2] 투자조합 출자사업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 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자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 민간자금 : 정부(예산·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당해 펀드 결성 후 1년이 경과하고도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

### [3]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
  -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자체청사는 임차·매입·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 계속사업

-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 단위면적(m<sup>2</sup>)당 단가 및 면적기준

- 청사 신축시 m<sup>2</sup>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자치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 [4] 수익사업

#### □ 신규사업

-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 다음에서 서술한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연차별 투자계획
    -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 (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

-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3)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원리금 상환**

**(1)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 대상거래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용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 · 이자 상환, 예탁원금 · 이자 회수

□ 예수금 또는 용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 내부거래 확인원칙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
| ▪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 |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
| ▪ 기금간 거래인 경우        | ⇒ | ▪ 기금 상호간 확인         |

□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최대한 예탁

- 기금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

## [2]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

\* 현금성 자산 : 현금 또는 주식·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여유자금은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 금지

## IV 협의 및 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 사항(제 1부 2편 예산편성지침 참조)」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 요구시 각 기금운용주체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